

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6. 2. 20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년 2월 10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6년 2월 10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5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6. 2. 16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보건소장 김 윤 수)

가. 제안이유

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 및 진료비 수가와 종목을 조정, 정비하여 지역 주민에게 효율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수수료 및 진료비의 “별표” 내용을 일부 개정 (안 제2조 제2항)
 -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,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중
 - 근로자 건강진단서,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, 특별진단서, 성별 및 연령감정서 발급 사항을 삭제
 - 건강진단서와 재발급 수수료를 신설
 -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신고에 부속의료기관 개설 사항을 추가 등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--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략)

5. 討 論 要 旨 (없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